

# 해 외 경 정 정 책 동 향

본 협회 조사부

## 미 국

### 연방거래위원회, 채무회수대행업자에게 민사적 벌금 부과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D.C. Credit Services, INC.와 그 공동소유자인 David Cohen씨는 민사적 벌금 3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연방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 이들은 공정신용제공법(Fair Credit Reporting Act)과 공정채무회수대행업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사적 벌금의 부과 이외에도, David Cohen에게 영구히 채무회수대행업을 금지하는 동의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른바 신용사무소라고 알려져 있는 신용제공기관에 대하여는 피심인이 과거 7년 동안 제공했던 소비자에게 불리한 모든 정보들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신용제공법은 1997년의 개정에서 처음으로 채무회수대행업자 등에 대하여 법적 의무를 부과하였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D.C. Credit

Services, INC.와 David Cohen씨는 ① 신용제공기관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였고, ② 지금까지 제공된 정보가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다는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③ 소비자가 이미 보고한 것이라고 다투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신용제공기관에 이와 반대되는 정보를 제공하였고, ④ 잘못된 채무불이행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신용제공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무회수대행과 관련하여, 연방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이 ① 소비자를 위협·압박·학대하는 언어를 사용하였고, ② 불리한 정보를 알려거나 알리도록 위협했으며, ③ 소비자가 이미 보고한 것이라고 다투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신용제공기관에 이와 반대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공정채무회수대행업법 위반이라고 하였다.

D.C. Credit Services, INC.와 David Cohen씨는 1992년에도 공정채무회수대행업법 위반으로 이미 동의명령을 받은 바 있다.

동의명령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적시한 행위의 금지, 기타 공정신용

제공법과 공정채무회수대행업법에서 규제하는 위반행위의 금지 및 지금까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였던 부정확한 정보의 수정이 포함되어 있다. 피심인들의 채무회수대행업에의 종사를 금지하는 명령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유효하며, 그때까지 David Cohen씨는 채무회수대행과 관련한 소비자들과의 개인적인 접촉이 금지된다.

2002. 7. 1. 연방거래위원회

### 연방거래위원회, 폭력적 오락물 시장에 대한 보고서 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폭력적인 오락물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00년 9월의 의회 보고서인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폭력적 오락물 시장: 영화, 음악 및 전자게임 산업에 있어서 자율준수 및 산업 행태"에 관한 3차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방거래위원회는 주요 대중매체인 인쇄물, TV 및 인터넷 등을 추적했다. 또한 위원회는 어느 패키지 상품이 그 분야에서의 표시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각각의 세 분야의 산업에서 소매상품들에 대한 패키지도 검토했다.

이 3차 보고서는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급표시가 영화, 전자게임, 음악 산업에서 향상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각 산업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화 산업에 대해서는 최근의 연방거래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1차 및 2차 보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을 위한 대중 잡지에서는 적색 등급의 영화 광고는 사실상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이 35% 이상되는 장소에서는 적색등급의 영화를 광고하지 않는다는 자율준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영화 제작자들은 청소년들이 보는 TV 쇼에서 여전히 적색 등급의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화제작자들이 등급 정보와 그 이유를 광고에서 표시하고 있는 반면에, 몇몇 업체들은 이러한 등급표시를 알아보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로 음악 산업에서의 광고는 TV 나 청소년 대중 잡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산업에서는 광고를 하면서 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표시를 해 줌으로써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음악 산업의 등급표시 프로그램에 따르면 왜 그러한 등급을 받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MG사만은 세부적인 표시, 즉 폭력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성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지 여부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셋째로 전자오락게임 산업에 대해서

이 보고서는 광고시 등급표시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전자게임 산업은 여러 형태의 대부분의 광고에서 뛰어난 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비록 TV 광고에서의 내용 묘사를 포함하여 몇 가지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기는 하지만 게임 산업에서의 등급표시제는 다른 산업에서도 수용해야 할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오락 산업시장에서의 행태를 내년까지 계속 모니터링 방침이며, 이를 기초로 더욱 보완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보고서의 발간에 대해 위원들은 모두 찬성의 뜻을 표하고 있으며, Swindled 위원은 "어린이들에게 폭력적인 오락물 시장에 대한 위원회의 감시활동을 지지한다. 이러한 보고서의 발간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폭력적인 내용물 시장이 확장되는 것에 대한 대중들의 논쟁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있어 필요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2002. 6. 28. 연방거래위원회

## E U

### 유럽위원회, 도이치 텔레콤의 가입자회선에 대한 반경쟁적인 접속요금 설정건 심사

유럽위원회는 신중한 심사 결과, 독

일 국내 가입자회선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인 도이치 텔레콤 AG(DT)가 고정전기통신망(가입자회선)의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가격설정을 함으로써 지배적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예비적 결론을 제시한 이의고지서를 송부했다.

동 위원회는 가입자회선의 도매접속에 관해 DT의 가입자가 소매접속에 지불하는 것보다 고액의 요금을 신규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참여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방해해, 소비자에게 가격경쟁과 함께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한 공급업자의 선택을 감소시킨다. Mannesmann Arcor 및 독일 국내의 시장내 및 지역통신사업자의 주장에 의해서 시작한 위원회의 활동은 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탁월적 가격설정과 관련된 프랑스 텔레콤 자회사인 Wanadoo에 대한 이의고지서 송부 및 휴대통신망의 착신요금에 관한 네덜란드의 지배적 기업인 KPN에 대한 이의고지서 송부에 따른 것이다.

마리오 몬테 경쟁정책담당위원은 「유럽의 경우 전기통신시장의 완전자유화로부터 4년이 지났으며 경쟁은 중대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는 많은 유망 신규참여업자가 동 사업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가입자회선의 경우에 특히 심각하다. 나는 이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현재 분명히 우리의 첫 번째 우선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경우 양국의 신규참여업자가 지

배적사업자와 유효하게 경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매월 가입료와 통화료간의 적절한 밸런스를 보충하기 위한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가입자회선의 접속

「가입자회선(local loop)」이란 고객의 건물과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역교환기 사이의 물리적인 회선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양방의 동선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기통신시장에서의 신규참입업자는 1세기에 걸쳐 건설된 것과 같은 통신망을 복제하는 것은 기술적, 환경적 및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종고객에의 소매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정하고도 비차별적인 조건에 기초한 당해 가입자회선에의 접속(소위 「가입자회선의 개방」)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가입자회선의 개방은 전기통신서비스의 보급에 중요하고, 따라서 뉴-이코노미의 성공에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개방의무는 EU 레벨에서는 법령에 의해 지배적인 사업자에게 부과되고, 도이치 등 몇몇의 가맹국에서는 국가 레벨에게 부과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가입자회선의 개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규제의 틀은 이용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 가격설정이라는 가입자회선 개방의 조건도 EU경쟁법에 기초한 심사대상이 된다.

■ 독일내에 있어서의 DT의 시장상황

DT는 독일에서 두 가지의 다른 단계로 가입자회선의 접속을 제공하고 있

다. DT는 최종고객에 대한 소매서비스에 더하여, 경쟁업자에게 가입자회선을 개방하고, 이와 같은 경쟁업자는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DT는 경쟁업자를 상대로 하는 가입자회선의 도매접속은 물론 및 최종고객을 상대로 하는 소매접속서비스 시장에 있어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어느 쪽 시장에도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DT 가입자회선망은 경쟁업자에 대해 도매접속서비스의 제고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소매접속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기술적 인프라 스트럭처는 아니다. 그러나 광화이버망, 무선전화통신망, 위성, 전선 및 개량 케이블·TV망을 포함한 다른 대체수단은 아직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아 DT의 가입자회선망과 동등한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위원회의 예비적 견해에서는 DT는 가입자회선의 도매 및 소매접속 쌍방의 시장에 있어서의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도매접속에 관해서는 DT는 경쟁업자에게 도매단계에서 전국 규모의 접속을 가능케 하는 통신망을 가진 독일에서의 유일한 사업자이다. 소매접속에 관해서는 DT는 경쟁의 도입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이래 98%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를 다수의 경쟁업자 사이에서 나누어지고 있다.

■ 가결결과와 마진

위원회는 이의고지서에 언급한 것처럼 DT는 부당한 가격설정을 통해서 지배적지위를 남용함으로써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의 차액(margin)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마진의 착취는 DT가 설정한 가입자에 대한 요금과 가입자회선의 도매접속요금과의 부적당한 괴리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Mannesmann Arcor 및 다수의 시내·지역통신사업자 등 독일의 전기통신시장에서의 신규참입자로부터 가입자회선의 접속에 관계된 이와 같은 마진의 착취에 관해 DT에 대한 수건의 시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DT가 도매접속요금의 인하 또는 소매가입요금의 인상, 혹은 그 두 개의 요금을 결합하는 것으로서 1998년부터 마진의 착취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DT에 의한 소매 및 도매 쌍방의 최근 요금변경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처럼 보여지나 가입자회선접속요금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DT와 같은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자는 신규참입업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차라리 도매요금을 충분히 상향하는 수준으로 소매요금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위원회는 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EC조약 제82조를 이용할 수 있다. DT는 위원회의 예비적인 분석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2개월의 시간을 갖고, 구두에 의해 청문회장에서 그들의 주장을 진술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원회가 최종적 입장을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절차가 종료된 후에 하기 때문이다.

2002. 5. 8. 유럽위원회

**EU 경쟁평의회, GIE Sports libre사의 월드컵 축구 라디오방송권에 대한 중지조치**

EU 경쟁평의회는 RMC Info사로 부터의 신고에 따라 GIE Sports libre사의 월드컵 축구 라디오방송에 관련된 배타적 권리에 관해 RMC Info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 2002. 4. 20일자로 GIE Sports libre사에 이에 대한 중지조치를 명했다.

■ RMC Info사가 취득한 배타적 방송권

2001. 12. 4. RMC Info사는 Kirchmedia사- Kirchmedia사는 국제축구연맹(FIFA)과의 협정에 의해 2002년 월드컵 대회에 대한 배타적 라디오방송권을 취득했다. -와의 프랑스 전역내에 있어 배타적 라디오방송권을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프랑스 국내 전역을 커버토록 노력하는 의무도 포함했다. RMC Info사에 의해 방송 범위는 프랑스 인구의 반만 포함하고 있어, RMC Info는 서브라이센스 협정에 의해 타 라디오방송사업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2001. 12. 17. 주요 일반 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수의 명의로 정보 자유의 원칙을 주장, 각 사업자가 스포츠와 관련된 권리 취득에 관한 방침의 배타성을 위임하는 Sports libre라고 칭하는 GIE(경제이익단체 : 자연인 또는 법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 법인격을 가지고 판매, 수출입, 조사연구 등의 구성원의 경제활동의 일부를 공

동으로 행하는 것으로 구성원의 경제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설립했다.

RMC Info사와 GIE와는 서브라이센스 협정의 교섭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어떠한 교섭을 행하는 것도 금지하는 GIE의 규칙에 의해) GIE의 구성원 개별로 교섭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RMC Info사는 EU 경쟁평의회에 대해 월드컵이 임박한 것을 고려해 GIE에 대해 긴급조치를 강구토록 요청했다.

■ 라디오방송권 판매와 관련한 방침에 따라 야기된 문제

GIE는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배타적 라디오방송권의 존재에 관한 방침에 대해 GIE의 구성원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U 경쟁평의회는 배타적 라디오방송권 판매의 합법성에 대하여 스스로의 의견을 진술할 입장이 아니라 판단했다. 그러나 CSA(방송미디어 고등평의회(Le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 공공, 민간의 라디오, TV방송을 규제하는 합의제의 독립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현행 법률, 규칙의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도 스포츠이벤트의 라디오중계의 배타적 권리의 취득은 금지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제시했기 때문에 EU 경쟁평의회는 자신이 RMC Info사의 신고에 따라서 조사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론은 복수 기업의 구입방침을 공동으로 설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때로는 당해 사

안의 검토를 정당화하려고 경쟁상의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다.

■ 중지조치의 필요성

월드컵의 스케줄을 고려할 때, (RMC사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프랑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취자가 월드컵 축구시합에 중계를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경쟁평의회는 소비자-청취자의 이익에 손실을 주는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것이 EU 경쟁평의회가 GIE Sports libre에 대해 월드컵 축구경기의 라디오중계에 관해 GIE의 멤버가 개개의 사업자와의 스포츠이벤트 중계에 관하여 교섭하고 협정에 대해 교섭하거나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GIE의 정관 및 내규의 규정을 실효시키는 것을 명령한 이유이다.

상기 절차는 신고에 대한 심사에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심리는 후일 행해지고, 별도로 결정에 이른다.

2002. 5. 2. EU 경쟁평의회

**일 본**

**전기사업분야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기사업분야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 그 동안 '정부규제 및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이 연구회에서

는 이미 수차례에 걸친 정책 제언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 연구회에서 전기사업분야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한 환경정비와 관련되는 기본방침을 정하여 발표하였다.

현재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기사업분과회에서 전기사업분야의 제도개혁에 대한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일반가정까지 전기사업을 자유화(전면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중이다. 이처럼 자유화의 범위를 일반가정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기사업분야에서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999년부터 행해지고 있는 자유화 상황, 전력회사에 의한 송전망의 독점, 전력회사의 지역 독점적인 지위 등을 감안한다면, 송전부분의 중립성의 확보나 전국적 전력 유통 등의 경쟁환경 정비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사업분야에서의 유효경쟁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경쟁이 유효하게 기능하고 전력 수요자가 자유화의 장점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구축한 다음, 자유화의 범위를 일반가정까지 조속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 보고서의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연구회의 보고서는 크게 4가지를 다루고 있다. 전력시장에 신규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광범위하게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 송전분야에서 공정한 룰의 확립, 그리고 기사업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룰의 확보에 관한 내용이 그것이다.

먼저 전력시장에 신규진입을 촉진하

기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력사업의 발전부문은 제도적으로 자유화가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력회사가 전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금지법을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신규참가자에 대한 침입방해 행위를 배제하고 해당행위의 방지를 꾀하는 동시에 전력의 사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현재 전력의 사거래에 관한 기본적 규제는 없으며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신규사업자들이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반면, 전력회사는 중앙전력협의회를 설립하고 전력회사간의 사거래(전력유통)를 행하고 있다.

전력회사간의 전력유통제도는 전력회사마다 독립되어 있는 전력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연계선의 구축 등 종래의 전력회사의 지역독점을 전제로 한 전기사업제도에서 전기공급의 안정성 확보 등에는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유통제도는 신규참입자도 일부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력회사간의 협정에 기초한 폐쇄적인 제도이다. 그러므로 전력의 사거래를 활성화 하고 신규참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① 현행 중앙전력협의회에 의한 전력유통제도의 근본적 재검토

자유화의 범위가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을 전제로 한다면, 현행 전력유통제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폐지 등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효율적이고 공정한 연계선 사용 실현

현재 전력회사간의 전력유통이 연계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기존 거래가 효율적이고 공정한 연계선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전력거래소의 창설

사거래나 전력회사의 전원확보 현상을 감안하면, 자유화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사거래가 당연히 활발해 진다고 상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분야나 소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자나 자가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 등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고, 실시간거래, 1일전거래, 선불거래 등 여러 가지 거래가 가능한 전력풀(pool)시장(전력거래소)을 창설하여 자가발전설비 잉여전력의 공급선을 확대함과 동시에 신규사업자가 자가발전설비 잉여전력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력거래소의 창설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계통운용과의 충분한 제휴, 운용 중립성의 확보와 함께 광역성의 확보나 거래의명성의 확보 등 독점의 배제를 위한 조치가 불가결하다고 생각된다.

둘째는 광역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일본 송전망의 특징은 지역독점이라는 전제하에 공급구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구역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도록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전력회사간의 연계선이 정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기본적으로는 전력회사마다 갖추고 있는 네트워크를

연계선에 접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력회사의 공급구역 밖에 있는 가정에 전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의 구조에서는 공급구역마다 대체요금, 연계선 설비 등 특별한 설비 사용에 대한 요금이 가산된다.

이와 같은 전력회사의 계통운용과 대체요금의 가산 등은 전력회사의 공급구역을 넘는 전력공급을 소극적으로 하도록 하며 경쟁을 일정 지역에 한정 시키게 한다. 전력회사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광역적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독립성이 높은 지역 네트워크를 전국적 광역 네트워크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전력의 효율적인 공급 등을 고려하면서, 독일의 탁송요금제나 EU의 국경을 넘는 전력 유통제도 등을 참고하여 현행의 대체요금제도를 폐지하는 등 송전서비스 이용요금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탁송분야에 있어서 공정한 룰의 확립이다. 전기사업분야에서 경쟁이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발전분야, 탁송분야, 도·소매분야에서 각각 경쟁이 유효하게 기능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전분야 및 도매분야는 자유화되었으며, 소매분야에는 자유화가 대폭 확대되고 있지만, 송전분야에서는 이중투자의 방지 등의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경쟁이 도입되지 않아 독점이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독점이 유지되고 있는 송전분야가 전력거래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임을 감안한다면, 송전분야에 있어서의 공정한 룰의 확립이 전기사업분야에서 유효한 경쟁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여겨진다.

① 정보면에서 전력회사의 전력거래에 관한 이점의 해소

전력회사에 의해 계통운용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전력회사와 신규참가자 사이에 격차가 생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력회사가 계통운용을 계속 행하는 경우에는 송전부분 및 기타 부분과의 엄격한 정보 차단조치와 수요자의 수요 형태, 탁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정보를 신규참가자와 공유하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결하다. 만일 계통운용을 제3기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에 있어서 정보의 격차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신규참가자들을 포함시켜 공정한 룰을 만들 필요가 있다.

② 계통운용 투명성의 확보

전력거래시 송전망 이용에 있어서 공정경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계통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운용규칙, 운용상황 등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가 불가결하다. 만일 계통운용을 전력회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 이외에 송전부분과 기타 부분간의 엄격한 회계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외에 감사법인을 회계감사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③ 전력의 광역유통 촉진

현행 제도하에서의 전력의 광역유통에 대한 검토를 함에는, 전력회사의 지역독점과 전력회사간의 협정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화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전력회사와 전력의 광역유통과의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전력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역별 전력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연계선의 확충, 운용 등에 관해

서는 신규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참가자들의 공평한 부담하에 공정하고 적절한 연계선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전기사업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룰의 확보이다. 계통운용 중립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공정한 룰을 마련하는 동시에 경쟁의 기본 룰인 독점금지법에 의한 사후규제를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계통운용의 중립성 확보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국적인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기까지 전력회사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

① 독점금지법의 엄정한 집행 및 가이드라인의 제정·공표

현재 「적정한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제정·공표한 외에, 2002년 현행 전력제도에 대한 보충안이 작성되고 있다. 이 보충안은 전기사업분야의 시장구조를 바탕으로 전력회사의 일정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구축되면 이 제도나 시장구조를 전제로 한 독점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독점금지법의 집행을 엄정히 하는 한편 신규참가자나 전력회사 등에 상담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② 계통운용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감시기관의 설립

계통운용의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계통운용에 관련된 규제 또는 계통운

용의 룰을 감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ion Commission)와 같은 기관에 의해 계통운용에 대한 규제·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규제·감시 기관과의 제휴 강화

전력회사와 신규사업자와의 분쟁은 계약교섭과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가 요청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규제·감시기관이 상호성있는 제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접한 경우에는 사업규제·감시기관이 조속히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계통운용에 관계되는 분쟁에 관해서는 사업규제·감시기관이 처리하며, 새로운 룰의 제정이나 기존 룰의 변경, 특정 행위가 경쟁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충분한 제휴를 행하는 구조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규제 및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는 岩田 規久男 교수(학습원대학 경제학부)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井手 秀樹 교수(게이오대학 상학부), 岸井 大太郎 교수(법정대학 법학부), 清野 一治 교수(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下村 研一 교수(오사카대학대학원 국제공공정책연구과), 白石 忠志 교수(동경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根岸 哲 교수(고베대학대학원 법학연구과), 松村 敏弘 교수(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 山内 弘陸(이코대학대학원 상학연구과), 吉野 源太郎 논설위원(일본경제신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어해설〉

- 중앙전력협의회: 광역적 운영에 의한 전기사업의 종합적이고도 합리적인 발달에 이바지하도록 상호협조의무(일본 전기사업법 제28조)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각 전력회사 및 전원개발주식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유통제도나 그 운용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전력유통·경제유통: 전력회사 상호간 전력의 도매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전력협의회에서 운용되고 있는 전력의 유통에는 발전설비의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공급력 부족이나 공급여력이 있는 수력발전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는 등 지역적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의 광역적 해소 등 공익적 과제 달성을 위한 '수급상호응원유통', '광역상호협력유통'이라는 공급하고 남는 범위내에서 발전비용절감으로부터 행해지는 '경제유통'이 있다. 경제유통은 스타트적인 전기 거래는 신규사업자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신규사업자로 참가하고 있는 회사는 2개사(에넷트(주)와 다이아몬드 파워(주))가 있다. 그 외 전력회사 2개사 간에 행해지는 2사간 유통이 있다.
- 풀시장: 발전사업자에서부터 파워마케터 등의 중개업자, 배전회사 등의 최종 공급자 등이 참가해 전기를 사고파는 거래시장을 말한다. 자유화가 달성된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

에서는 다수의 참가자가 이용하는 전력거래소가 설립되어 있다. 그 유형으로는 이러한 풀에서 모든 전력거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강제 풀과 임의 풀의 2종류가 있다.

- 연계선: 광역적인 전력공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전력회사의 공급구역을 연결하는 설비를 말한다.
- 계통운용: 송전 네트워크의 일부에서 발생한 사고 등이 순간적으로 다른 부분에 파급되어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전체를 일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대체요금: 해당 공급구역의 전력회사에 대해서 연계선 등 필요한 설비의 이용의 대가로 지불되는 요금을 말한다. 대체공급과 관련된 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해서는 전력회사가 대체요금 약관을 작성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다.
- 탁송요금: 신규참가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수전하는 그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접속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공급구역의 전력회사에 대하여 송전망 등의 설비의 이용대가로 지급되는 요금을 말한다. 접속공급과 관련된 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해서는 약관을 작성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다.

2002. 6. 28. 공정거래위원회

## 캐나다

### 경쟁국,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들 기소

캐나다 경쟁국은 3인의 자연인과 4개의 회사를 오인유발적 표현 및 기만적인 마케팅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기소는 복권 판매를 함에 있어서 기만적인 우편물을 발송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기소를 당한 자는 토론토에 위치한 두 개의 회사인 HMS Direct Limited사와 Hallstone Products Ltd.이고, 이 회사들의 대표인 David Stucky와 종업원인 Sylvia Carbone이다. 이와 함께 밴쿠버에 위치한 483775 B.C. Ltd.사와 Ravenshoe Services Limited사, 그리고 이들 회사의 대표인 Tom Taylor도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기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된 우편물들은 캐나다 복권구매자협회, 국제복권위원회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명의로 발송되었으며, 이 우편물들 중 수백만통은 미국,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개인들에게 보내졌다. 우편물에는 그 수령자들에게 다양한 국제 복권을 구입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경쟁국은 그 우편물에는 소비자들이 당침될 확률을 과장되게 표시하고 있으며, 마치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복권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하고 있고, 이미 당침된 소비자들도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쟁국에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 기소를 한 것은

캐나다가 이러한 종류의 오인유발적 또는 기만적 행위에 대한 안전 지역이 되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Raymond Pierce 공정거래부 부위원은 밝혔다. 또한 그는 "외국인들을 속이고 손해를 입히는 이러한 행위들은 캐나다의 국제적 명성을 실추시키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경쟁국은 이번 사건을 토론토와 밴쿠버에 있는 기관들과 공조를 통해 조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만적인 텔레마케팅 및 우편물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벌일 것이다.

2002. 7. 3. 캐나다 경쟁국

### 경쟁국,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들 추가 기소

캐나다 경쟁국은 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오인유발적이고 기만적인 마케팅을 행한 Yellow business.ca와 그와 관련한 우편발송을 한 혐의로 개인적인 책임을 물어서 경쟁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James Tetaka는 지난 2001년 5월 25일 인터넷 주소록 사업을 위한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토론토 지역의 거주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사서함에 돈을 요구하는 내용물을 동봉했다. 경쟁국의 조사요원들은 이 우편물들이 Bell Canada or the Yellow Pages와 같은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가 85.55달러를 요구하는 송장(invoice)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졌음을 발견했다.

이 기소는 Yellow business.ca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던 1473253 Ontario Inc.사의 대표인 Peter

Kuryliw씨의 진술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다. Kuryliw씨는 2002년 5월 28일 3만 달러의 벌금과 90일간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러한 기소는 기만적인 캐나다내의 사업자들과 비영리 기관들을 대상으로 우편물 사기를 행하는 자들에게 개인적 책임을 물으려고 경쟁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표시"라고 Raymond Pierce 공정거래부 부위원은 말했다.

2002. 7. 4. 경쟁국